

S.D.N.Y. 연방법원 민사소장 작성 템플릿

한국어 번역본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웹사이트: <https://americannewspaper.org>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제출할 민사소장(Complaint)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형 번역 템플릿입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관할권, 청구원인, 시효, 피고별 책임, 증거, 송달 요건, 판사 개별규칙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주의: 이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문서 작성 참고자료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변호사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서 개요

이 번역본은 S.D.N.Y.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Complaint 초안 작성 구조를 한국어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요구한 court caption, 당사자 정보, subject matter jurisdiction, personal jurisdiction, venue, factual allegations, causes of action, damages and injuries, demand for relief, jury demand, signature block, filing checklist를 모두 포함합니다.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8은 관할근거, 청구사실의 간명한 진술, 구제청구를 요구합니다. Rule 10은 caption과 번호별 paragraph 형식을 요구합니다. 사기(fraud) 청구가 포함되면 Rule 9(b)에 따라 사기 정황을 특정성 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S.D.N.Y.는 Manhattan, 즉 New York County를 포함하므로, 사건의 실질적 발생지가 Manhattan이면 venue 주장은 일반적으로 28 U.S.C. § 1391(b)(2)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1. 먼저 필요한 정보

- 사건 발생일, 장소, 관련자, 핵심 행위
- 피고별 구체적 행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 원고와 피고의 citizenship/domicile 또는 회사의 incorporation state와 principal place of business
- LLC 또는 partnership인 경우 모든 member/partner의 citizenship
- 청구 유형: federal statute에 근거한 청구인지, New York state law claim인지
- 손해액: 75,000달러 초과 여부와 손해 산정 근거
- Manhattan 또는 S.D.N.Y.와의 연결점
- 계약서, 이메일, 문자, 영수증, 고용문서, 의료기록 등 증거
- arbitration clause, forum-selection clause, prior lawsuit, related case 존재 여부
- 원하는 구제: damages, injunction, declaratory judgment, specific performance, attorney's fees, jury trial 등

2. Draft Complaint - 한국어 번역 템플릿

아래 양식은 실제 제출용 영어 Complaint의 논리구조를 한국어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S.D.N.Y. 제출 문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이 번역본은 내용 설계와 사실관계 정리에 사용하는 참고용입니다.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원고 전체 법적 성명], Civil Action No. _____

Plaintiff, COMPLAINT

v. JURY TRIAL DEMANDED

[피고 전체 법적 성명],
[제2 피고 전체 법적 성명, 해당 시],

Defendants.
```

[원고 전체 법적 성명](이하 “원고”)은 아래 서명한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 [피고 전체 법적 성명] 및 [제2 피고 전체 법적 성명](총칭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I. 서론 (Introduction)

1. 이 민사소송은 [핵심 분쟁을 간단히 기재: 예컨대 피고들의 계약위반, 사기적 허위진술, 불법적 고용관행, 민권침해, 증권법 위반, 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실 또는 기타 위법행위]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2.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피해에 대한 구제를 구한다. 그 손해에는 [금전손실, 영업손실, 정신적 고통, 의료비, 평판훼손, 법정손해, 징벌적 손해, 변호사비, 금지명령, 선언적 판결 및/또는 기타 구제]가 포함된다.
3. 이 소송의 원인이 된 중요한 사건들은 전부 또는 실질적 부분이 [Manhattan, New York County, New York / 기타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내 장소]에서 발생하였다. 그 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이 포함된다.

II. 당사자 (Parties)

4. 원고 [원고 전체 법적 성명]은 [시, 주]에 domicile을 둔 개인이며, diversity jurisdiction 판단상 [주]의 시민이다.
5. 원고의 주소는 [원고 주소]이다.
6. 원고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원고 [법인명]은 [주/국가] 법에 따라 설립된 [corporation/LLC/partnership/기타 법적 주체]이며, 주된 영업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는 [주소]이다. 원고는 28 U.S.C. § 1332 목적상 [주(들)]의 시민이다.
7. 피고 [피고 전체 법적 성명]은 [시, 주]에 domicile을 둔 개인이며, [주]의 시민이다.
8. 피고의 주소는 [피고 주소]이다.
9. 피고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피고 [법인명]은 [주/국가] 법에 따라 설립된 [corporation/LLC/partnership/기타 법적 주체]이며, 주된 영업소는 [주소]이다. 피고는 28 U.S.C. § 1332 목적상 [주(들)]의 시민이다.
10. 피고 [피고명]은 New York에서 영업을 하거나, New York에서 거래를 하거나, 이 사건을 발생시킨 작위 또는 부작위를 New York에서 하였거나, 아래 기재된 행위로 New York에서 손해를 발생시켰다.

III. 관할권 및 재판적 (Jurisdiction and Venue)

A. Subject Matter Jurisdiction

11. 이 법원은 28 U.S.C. § 1331에 따라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가진다. 원고가 [연방 법률, 헌법 조항 또는 federal cause of action을 특정]에 근거한 청구를 제기하므로, 이 사건은 미국 헌법, 연방법 또는 조약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12. 해당 시: 이 법원은 또한 28 U.S.C. § 1332(a)에 따라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가진다. 이 사건의 controversy 금액은 이자와 비용을 제외하고 75,000달러를 초과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complete diversity of citizenship이 존재한다.
13. 원고는 [주]의 시민이다. 피고 [이름]은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원고도 어떠한 피고와 동일한 주의 시민이 아니다.
14. 해당 시: 이 법원은 28 U.S.C. § 1367(a)에 따라 관련 주법 청구에 대한 supplemental jurisdiction을 가진다. 그 주법 청구들은 연방 청구와 충분히 관련되어 Article III상 동일한 case or controversy를 구성한다.
15. federal question이 없고 diversity도 완전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유효한 다른 관할근거가 없는 한, 다양성 당사자 사이의 순수한 주법 청구만으로는 연방법원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filing 전 관할근거를 수정해야 함을 인정한다.

B. Personal Jurisdiction

16. 이 법원은 피고 [이름]에 대하여 personal jurisdiction을 가진다. 그 이유는 피고가 [New York에 거주 / New York에 domicile / New York에 주된 영업소 보유 / New York에서 거래 / New York에 goods 또는 services를 공급하기로 계약 / New York에서 tortious acts 수행 / New York을 향한 목적적 행위로 New York에서 손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17. 피고는 [협상, 계약, 통신 발송, 대금 수령, 서비스 수행, 사무실 운영, 마케팅, 원고 고용, Manhattan 내 행위 또는 기타 행위]를 통하여 New York에서 활동할 특권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

18. 원고의 청구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한 피고의 New York 관련 접촉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다.

C. Venue

19. 재판적은 28 U.S.C. § 1391(b)(1)에 따라 이 District에 적절하다. 그 이유는 [모든 피고가 New York에 거주하고, 적어도 한 명의 피고가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20. 재판적은 또한 28 U.S.C. § 1391(b)(2)에 따라 적절하다. 원고 청구의 원인이 된 사건 또는 부작위의 실질적 부분이 이 District에서 발생하였고, 그에는 [Manhattan/S.D.N.Y. 내 구체적 사건]이 포함된다.

21. 해당 시: 이 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실질적 부분이 이 District에 위치하므로 재판적이 적절하다. 그 재산은 [재산 설명]이다.

IV. 사실관계 주장 (Factual Allegations)

22. [날짜]경, 원고는 [원고의 지위, 피고와의 관계 또는 역할을 설명]하였다.

23. [날짜]경, 피고 [이름]은 [구체적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였다.

24. 그 당시 피고 [이름]은 [구체적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다.

25. 원고는 [구체적 인과관계 사실] 때문에 피고의 행위에 합리적으로 의존하였거나, 영향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

26. [날짜]경, 원고와 피고는 [계약 체결 / 사업관계 / 고용관계 / 통신 / 거래 완료 / 기타] 관계에 있었다.

27. 관련 계약, 통신, 정책, 거래 또는 사건은 [구체적 조건 또는 진술]을 규정하였다.

28. 원고는 [구체적 이행행위]를 통하여 원고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29. 피고는 [구체적 사실]을 통하여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하거나, 허위진술을 하거나, 차별 또는 보복을 하거나, 과실행위를 하거나, 연방법을 위반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하였다.

30. 원고는 [날짜]경 [이메일, 서신, 전화, 회의, 법적 통지, 내부 신고, 행정기관 진정 또는 기타 수단]으로 피고에게 문제를 통지하였다.

31. 피고는 [구체적 반응]을 보였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32. 피고의 행위의 직접적이고 근접한 결과로 원고는 [구체적 피해]를 입었다.

33. 원고의 손해에는 [out-of-pocket 손실], [lost profits], [lost wages], [medical expenses], [emotional distress], [reputational harm], [statutory damages], [attorney's fees] 및 [기타 손해]가 포함된다.

34. 원고는 이 소송 제기 전에 필요한 모든 conditions precedent를 충족하였거나, 그러한 조건은 포기, 면제 또는 부적용된다.

35. 행정절차 선행이 필요한 경우: 원고는 [날짜]에 [EEOC/SEC/FINRA/기타 기관]에 charge/complaint를 제출하였고, [날짜]에 [right-to-sue letter/final agency action/기타]를 받았으며, 적용 가능한 기한 내에 이 소송을 제기한다.

V. 청구원인 (Causes of Action)

COUNT I - [청구명] / 피고 [이름]에 대하여

36. 원고는 위 1항부터 35항까지를 모두 이곳에 완전히 다시 기재한 것처럼 반복하여 주장한다.

37. 이 청구의 법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a) [요소 1]; (b) [요소 2]; (c) [요소 3]; (d) [손해/인과관계/기타 필수 요소].

38. 피고 [이름]은 [구체적 사실, 법적 결론이 아님]으로 요소 1을 충족하였다.

39. 피고 [이름]은 [구체적 사실]로 요소 2를 충족하였다.

40. 피고 [이름]은 [구체적 사실]로 요소 3을 충족하였다.

- 41. 피고의 행위는 [구체적 인과관계]에 따라 원고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 42. 원고는 [구체적 손해 항목 및 금액, 확인 가능 시]를 포함한 손해를 입었다.
- 43. 피고 [이름]은 [피고별 책임 이론]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COUNT II - 계약위반 (Breach of Contract) / 해당 시

- 44. 원고는 위 1항부터 43항까지를 모두 이곳에 완전히 다시 기재한 것처럼 반복하여 주장한다.
- 45. [날짜]경, 원고와 피고는 [대상]에 관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 46. 그 계약은 피고에게 [구체적 계약상 의무]를 요구하였다.
- 47. 원고는 [구체적 이행]을 포함하여 계약상 원고에게 요구된 모든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였다.
- 48. 피고는 [구체적 위반]으로 계약을 위반하였다.
- 49.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원고는 [구체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입었다.
- 50. 원고는 재판에서 확정될 금액, 다만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COUNT III - 사기 / 사기적 허위진술 (Fraud / Fraudulent Misrepresentation) / 해당 시

주의: fraud 청구는 Rule 9(b)에 따라 who, what, when, where, how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51. 원고는 위 1항부터 50항까지를 모두 이곳에 완전히 다시 기재한 것처럼 반복하여 주장한다.
- 52. [날짜]경, [장소]에서 피고 [이름]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정확하거나 실질적으로 정확한 진술].”
- 53. 그 진술은 [구체적 이유] 때문에 허위였다.
- 54. 피고가 그 진술을 할 당시, 피고는 [피고의 지식 또는 reckless disregard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때문에 그 진술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에 대한 중대한 무시 상태에 있었다.
- 55. 피고는 [구체적 행위]를 통하여 원고가 그 진술을 신뢰하도록 의도하였다.
- 56. 원고는 [구체적 신뢰행위]를 통하여 그 진술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였다.
- 57. 원고는 그 신뢰의 직접적 결과로 [구체적 인과관계 사실]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
- 58. 원고는 [구체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입었다.

COUNT IV - 과실 / 불법행위 청구 (Negligence / Tort Claim) / 해당 시

- 59. 원고는 위 1항부터 58항까지를 모두 이곳에 완전히 다시 기재한 것처럼 반복하여 주장한다.
- 60.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 duty]를 부담하였다.
- 61. 피고는 [구체적 과실행위 또는 부작위]로 그 duty를 위반하였다.
- 62. 피고의 duty 위반은 [구체적 인과관계 사실] 때문에 원고 피해의 실제 원인 및 근접원인이었다.
- 63. 원고는 [구체적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또는 영업상 피해]를 포함한 손해를 입었다.

COUNT V - 연방 법정청구 또는 민권청구 (Federal Statutory or Civil-Rights Claim) / 해당 시

- 64. 원고는 위 1항부터 63항까지를 모두 이곳에 완전히 다시 기재한 것처럼 반복하여 주장한다.
- 65. 피고는 [연방 법률 또는 헌법상 권리]를 [구체적 행위]로 위반하였다.
- 66. 원고는 [구체적 사실] 때문에 [해당 법률/권리]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67. 피고는 [구체적 사실] 때문에 [color of state law / federal statutory coverage / employer status / regulated entity status / 기타 필수 지위]하에서 행동하였다.

68. 피고의 행위로 원고는 [구체적 피해]를 입었다.

69. 원고는 [해당 법률]에 따라 [statutory damages, compensatory damages, punitive damages, injunctive relief, declaratory relief, attorney's fees, costs 또는 기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VI. 손해 및 피해 (Damages and Injuries)

70. 피고들의 행위의 직접적이고 근접한 결과로 원고는 재판에서 입증될 금액의 실제 손해를 입었다.

71. 원고의 손해에는 [economic losses], [lost income], [lost business opportunities], [out-of-pocket expenses], [medical expenses], [emotional distress], [reputational harm], [statutory damages] 및 [기타 손해]가 포함된다.

72. 원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judgment 전 이자 및 judgment 후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73. 원고는 계약, 법률, 규칙 또는 기타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변호사비와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

74. 증거가 피고들이 고의, 악의, reckless conduct, 사기 또는 원고 권리에 대한 conscious disregard로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원고는 punitive damages를 받을 권리가 있다.

VII. 구제청구 (Demand for Relief)

WHEREFORE, 원고는 이 법원이 원고에게 유리하고 피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다음 구제를 명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A. 재판에서 결정될 금액의 compensatory damages;

B. 해당되는 경우 consequential damages, lost profits, lost wages, business losses, medical expenses 및 기타 economic damages;

C.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statutory damages;

D. 법이 허용하는 경우 punitive damages;

E. [구체적 선언 내용]에 관한 declaratory judgment;

F. 피고들에게 [구체적 작위]를 요구하거나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temporary, preliminary 및 permanent injunctive relief;

G. 해당 시 [계약상 의무]의 specific performance;

H. judgment 전후 이자;

I. 법이 허용하는 합리적 attorney's fees 및 costs;

J. 이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보는 기타 모든 구제.

VIII. 배심재판 요구 (Jury Demand)

75. 원고는 배심재판이 가능한 모든 쟁점에 대하여 jury trial을 요구한다.

Dated: [DATE]
New York, New York

Respectfully submitted,

[LAW FIRM NAME]

By: /s/ [ATTORNEY NAME]

[ATTORNEY NAME]

[Bar Number, if applicable]

[Address]

[City, State ZIP]

[Telephone]

[Email]

Attorney for Plaintiff

[PLAINTIFF NAME]

3. Filing Checklist - S.D.N.Y.

아래 체크리스트는 S.D.N.Y.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입니다. 사건 유형, 당사자, 청구원인, 배당 판사, 현지규칙에 따라 추가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목	필요 여부	메모
Complaint	필수	Rule 8/10 형식, numbered paragraphs, jurisdiction/venue/relief 포함
Civil Cover Sheet	필수	S.D.N.Y.는 Civil Cover Sheet를 case-starting form으로 요구한다. 최신 양식 여부 확인 필요.
Summons, AO 440	필수	각 피고에 대한 Summons를 제출하고 clerk 발급 후 송달해야 한다.
Filing fee 또는 IFP	필수	일반 civil filing fee 납부 또는 IFP 신청서 제출. 금액은 filing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CF filing	변호사 filing이면 사실상 필수	변호사는 ECF 계정으로 전자 filing. Pro se filing은 별도 절차 확인.
Service of process	필수	Summons 발급 후 FRCP Rule 4에 따라 각 피고에게 complaint와 summons 송달.
Rule 7.1 Disclosure Statement	해당 시 필수	비정부 corporate party는 parent corporation 및 10% 이상 publicly held owner disclose. Diversity 사건에서는 citizenship disclosure 확인.
Related case notice/statement	해당 시 필요	Local Civil Rule 1.6 및 판사 개별규칙에 따른 related case 의무 확인.
Judge's Individual Rules	배당 후 확인	Pre-motion letter, conference rule, discovery dispute 절차 등 확인.
Fraud claim	해당 시 Rule 9(b) 검토	who/what/when/where/how를 구체화해야 한다.
Federal statutory claim	해당 시 exhaustion 확인	EEOC, agency claim, administrative appeal, notice requirement 등 확인.
Diversity claim	해당 시 complete diversity 확인	Corporation은 incorporation state와 principal place of business, LLC는 모든 member citizenship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Complaint는 단순한 법적 결론의 나열이 아니라, Twombly/Iqbal plausibility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 각 cause of action은 법적 요소, 그 요소를 충족하는 사실, 피고별 책임,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 Fraud, securities, civil-rights, employment discrimination, consumer protection, contract, tort 등 청구 유형에 따라 pleading standard와 선행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Federal question jurisdiction, diversity jurisdiction, supplemental jurisdiction은 서로 다른 논리구조를 가지므로, 사건별로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실제 filing 전에는 관할권, venue, statute of limitations, administrative exhaustion, arbitration/forum clause, service method, local rules, judge's individual rules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